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849호 2011. 9. 19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-51호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고시 -----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1029호 폐기공인 공고 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1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10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입법예고 ----- 10

회
람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- 51호

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고시

인천 서구 검단2지구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측량·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재설치 56점)을 고시합니다.

2011. 9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■ 개 요

1.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(이하 좌표와 같음)
2. 좌표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
		X좌표(m)	Y좌표(m)
별지참조			

3.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- 소 재 지 : 인천 서구 검단2지구 일원
- 측량연월일 : 2011년 5월 30일

4. 측량성과보관 장소

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

■ 열람안내

- 측량·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적측량기준점 목록

도근번호	중부		계양		비고
	X좌표	Y좌표	X좌표	Y좌표	
4870	455368.05	169977.08	5221.53	-4752.09	
4830	455355.36	169898.35	5208.61	-4830.77	
4832	455321.54	169847.14	5174.64	-4881.87	
4840	455203.53	169845.41	5056.63	-4883.24	
4843	455148.64	169820.84	5001.66	-4907.63	
4844	455142.95	169785.93	4995.87	-4942.52	
4841	455292.19	169775.66	5145.06	-4953.25	
4842	455358.97	169774.45	5211.83	-4954.67	
4868	455536.55	169816.04	5389.49	-4913.59	
4867	455579.44	169708.47	5432.05	-5021.27	
4854	455627.27	169811.94	5480.20	-4917.94	
4855	455664.59	169894.73	5517.77	-4835.26	
4858	455694.58	170060.04	5548.26	-4670.07	
4864	455738.23	170131.57	5592.15	-4598.70	
4845	455763.12	170176.15	5617.19	-4554.21	
4850	455684.67	170203.45	5538.84	-4526.68	
4853	455680.85	170156.68	5534.87	-4573.46	
4879	455619.85	170137.40	5473.82	-4592.55	
4860	455599.08	170193.56	5453.24	-4536.35	
4861	455560.05	170174.08	5414.16	-4555.71	
4862	455534.19	170125.80	5388.15	-4603.90	
4924	455459.07	170139.63	5313.06	-4589.84	
4878	455496.99	170046.96	5350.69	-4682.61	
4876	455572.27	169993.97	5425.78	-4735.80	
4875	455546.64	169965.00	5400.06	-4764.68	
4889	455463.46	170353.20	5318.11	-4376.33	
4887	455312.19	170390.43	5166.95	-4338.66	
4885	455226.28	170355.69	5080.95	-4373.15	
4899	455103.80	170627.36	4959.27	-4101.13	
4801	454956.44	170619.24	4811.93	-4108.83	
4897	454911.68	170580.15	4767.06	-4147.79	
4754	454877.15	170579.95	4732.54	-4147.89	
4896	454840.00	170573.49	4695.37	-4154.24	
4886	454763.61	170567.75	4618.96	-4159.76	
4859	454757.99	170653.35	4613.58	-4074.15	
4881	454743.36	170732.64	4599.17	-3994.82	
4884	454773.94	170754.81	4629.81	-3972.74	
4872	454804.75	170684.04	4660.42	-4043.60	
4869	454833.62	170640.24	4689.16	-4087.48	
4803	454877.86	170525.25	4733.09	-4202.57	
4918	454829.41	170380.87	4684.22	-4346.81	
4815	454789.20	170302.04	4643.78	-4425.52	

지적측량기준점 목록

도근번호	중부		계양		비고
	X좌표	Y좌표	X좌표	Y좌표	
4813	454771.10	170222.65	4625.45	-4504.86	
4916	454698.29	171034.96	4555.00	-3692.39	
4917	454698.20	171120.83	4555.18	-3606.52	
4814	454745.60	171138.37	4602.63	-3589.13	
4804	454758.97	171086.86	4615.84	-3640.68	
4914	454780.16	171047.09	4636.91	-3680.51	
4913	454836.83	171078.38	4693.67	-3649.39	
4912	454894.72	171128.04	4751.70	-3599.90	
4779	454953.25	171158.51	4810.31	-3569.60	
4919	455025.30	171212.40	4882.50	-3515.92	
4777	455050.43	171161.14	4907.48	-3567.25	
4776	455119.32	171188.92	4976.44	-3539.67	
4775	455167.20	171229.05	5024.42	-3499.68	
4774	455210.36	171258.28	5067.67	-3470.57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1029호

폐기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
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. 9. 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폐 기 사 유 : 인증기 미사용
2. 폐기 연월일 : 2011. 9. 15
3. 폐기공인명 및 인영 : “붙임참조”

폐 기 공 인 인 영

공 인 명	규 격(cm)	공인인영	비 고
석남1동장인/ 민원전용2 (인증기)	2.1×2.1		인증기 장기사용에 따른 마모 및 미사용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석남1동민원전용2 (인증기)	2.4×2.4		"
가좌3동장인/ 민원전용 (인증기)	2.1×2.1		인증기 미사용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가좌3동민원전용 (인증기)	2.4×2.4		"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1035호

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규정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」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9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개정사유

- 현행 「지방재정법」 이 (법률 제7663호, 2005.8.4.) 전면개정 되어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「식품위생법」 과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의 인용조문 명확화(안 제3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(안 제1조)
- 상위법인 「식품위생법」과의 통일을 위한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5조)

4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.10.10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【참조 : 위생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) Fax:(032)560-4379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 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다. 기타사항 등
- 개정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위생관리팀 【☎ 032)560-4373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영업신고를 한 자”를 “영업신고를 한 자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”이라 하고, “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법 제82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82조 및 법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금의”를 “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위생 관리시설”을 “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교육·홍보사업”을 “교육·홍보사업(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 지원을 포함한다)”로, “교육, 활동에 대한 지원”을 “교육·활동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”을 “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”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원”을 “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·보수”를 “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용자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식품위생 및 국민영양”을 “식품위생과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식품위생 교육·연구기관의 지원”을 “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식품위생, 국민영양,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, 영양관리,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어려운”을 “어려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개인사정에 의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제16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”를 “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103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규정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」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9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사유

- 「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」의 개정 규정 반영
-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의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영업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, 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우선순위에 “식품접객업소”, “건강기능식품업소”를 추가(안 제3조)
- 식품제조가공업소를 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” 및 “모범음식점 지원 자금”을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으로 의미의 명확화(안 제6조)
-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이자율을 3%에서 2%로 하향조정(별표)

4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.10.10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【참조 : 위생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) Fax:(032)560-4379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사항 등

- 개정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위생관리팀 【☎ 032)560-4373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제3조제1호 중 “식품제조·가공업소”를 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식품접객업소
6. 건강기능식품업소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식품제조가공업소”를 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모범음식점 지원 자금”을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으로 한다.

별표의 1. 용자조건 구분란 중 “모범음식점 지원자금”을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으로 하고, “식품제조·가공업소”를 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”로 하며, “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”를 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”로 하고, 이자율란 중 “3%”를 “2%”로 하며, 2. 용자범위 중 “모범음식점 지원 자금”을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으로 하고, “식품제조가공업소”를 “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